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1가단13156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539,094원 및 그중 13,766,602원에 대하여 2021.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8/357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C 사이에 2019. 5.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2)의 각 기재와 같다.

###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노진영

##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함평군  대 902㎡ 끝.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 C는 사례행위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약의 '수익자'입니다.

##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의 D 주식회사는 2018. 2. 14. 피고 B에게 금 1,500만원을 만기일자 2022. 4. 20, 대출금리 연 12.5%, 연체금리 연 19.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정보관리 참조).

그런데 피고 B은 위 차용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주)는 2018. 11. 30. 소의 E 주식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E(주)는 2019. 5. 15.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1) D와 E은 피고 2013. 10. 17.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D은 관련 채권을 E에 양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20,539,094원 및 금 13,766,602원에 대하여 2021. 5. 2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소외 F는 피고 B의 아버지인데, 위 F는 1989. 9. 4. 사망하였고, 피고 B는 위 F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F의 상속인들 및 피고 B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축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19. 6. 3. 피고 C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피고 B의 재산인데, 피고 B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C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은 채무자인 피고 B의 형제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피고 B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까.

(2)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동기 및 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별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례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례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C 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 에게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청구원인 (1)

### 1.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F는 1989. 9. 4. 사망하였고, 후술하듯이 상속인들은 2019. 5. 2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G', 'H'이 있었고[갑 제5호증의 1 제적등본(F), 갑 제5호증의 2 제적등본(I)], 기본증명서, 갑 제9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10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F의 배우자인 J은 2018. 8. 18. 사망하여 상속권이 없으며[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J) 참조], F의 장남인 K은 2016. 5. 9. 사망하여[갑 제7호증 기본증명서(K)], 그 배우자인 'L', 'C'(피고2), 'B'(피고1)이 있었습니다[갑 제7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K)].

따라서 피고들은 형제관계이고, 할아버지 F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자 피고 B의 상속지분은 2/21입니다(아버지 K의 지분  $1/3 \times 2/7$ ).

나. 위 F는 1989. 9. 4. 사망하였으나, 실제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19. 5. 29.입니다(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19. 5.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M 토지) 외에도 2개 필지 토지가 더 있었습니다.

(소장에서 언급된 부동산)

① 전라남도 함평군 M 대 902㎡ (갑 4)

(새롭게 발견된 부동산)

② 전라남도 함평군 N 답 1143㎡ (갑 9-1)

③ 전라남도 함평군 O 대 460㎡ (갑 9-2)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21 지분은 피고 B이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①항 부동산은 피고 C이, ②항 부동산은 G이, ③항 부동산은 H이 각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갑 8), 실제 그 협의대로 상속등기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2. 채무자 피고 B의 무자력

가. 법원행정처의 2021. 10. 15.자 회신에 의하면, 피고 B은 2018. 6. 1.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19. 5. 29.)를 거쳐 조회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습니다(적극재산의 부재).

나. 피고 B은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다. 위와 같이 피고 B은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 인해 B은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청구원인 (2)

### 1. 상속지분 등의 특정

#### 가. F의 1989. 9. 4. 사망으로 인한 당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피상속인 F는 1989. 9. 4. 사망하였고,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J'과 자식들인 'K', 'G', 'H'이 있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제적등본(F), 갑 제5호증의 2 제적등본(I) 참조].

당시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F의 사망으로 장남인 'K'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갑 제10호증 제적등본(K) 참조], 당시 민법<sup>1)</sup>에 의하면 호주상속을 할 경우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녀인 'G'은 1979. 11. 6. P와 혼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 12. 제적되었는데(갑 5-2 제적등본 중 20쪽 참조), 당시 민법에 의하면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J'은 자식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당시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J', 'K', 'G', 'H'의 상속배분율은 1.5 : 1.5 : 0.25 : 1로서, 각 상속지분은  $\frac{6}{17}$ ,  $\frac{6}{17}$ ,  $\frac{1}{17}$ ,  $\frac{4}{17}$ 입니다.

#### 나. K의 2016. 5. 9. 사망

이미 밝혔듯이 K은 2016. 5. 9.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L'과 자식들인 'C', 'B'이 있었는 바(갑 7-1, -2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K의 재산에 대한 B의 상속지분은  $\frac{2}{7}$ 입니다.

결국 K 사망 당시 B은 K의 재산( $\frac{6}{17}$ )의  $\frac{2}{7}$  지분인  $\frac{12}{119}$  지분( $\frac{6}{17} \times \frac{2}{7}$ )을 취득하였습니다.

#### 다. J의 2018. 8. 18. 사망

1)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이미 밝혔듯이 J은 2018. 8. 18. 사망하였는 바(갑 6 기본증명서), 그 상속재산은 망 K의 상속인(대습상속인), Q, H에게 각 1/3 지분씩 상속되었습니다.

따라서 B은 K의 대습상속인으로서 J 재산(6/17)의 12/357 지분( $6/17 \times 1/3 \times 2/7$ )을 취득하였습니다.

#### 라. 소결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은 48/357 지분( $12/119 + 12/357$ )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C이 채무자 피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지분은 48/357 지분입니다.

## 2. 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지분을 48/357로 변경하였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